

서울특별시 서울재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: 제2449호
- 다. 제출일자: 2025.2.3.
- 라. 회부일자: 2025.2.6.

2. 제 안 사 유

- '업사이클링'을 '재활용'으로 순화하는 동시에, 서울재활용플라자 운영 협의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운영으로 변경하여 운영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'업사이클링'을 '재활용'으로 순화(안 제2조~제4조, 제6조, 제10조).
- 나. 협의회 비상설화 및 부위원장직 폐지(안 제16조).
- 다. 협의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장 직무 및 협의회 운영 조항 정비(안 제17조~제18조).
- 라. 그 밖의 자구 정비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반영)

※ (의견내용)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은 이해충돌방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항
이므로 유지

※ (반영 사유)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유지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사항 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4.10.31.~11.20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‘업사이클링’ 용어를 ‘재활용’으로 순화하는 동시에 서울 재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) 운영 방식을 비상설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.

<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>

조 항		내 용
안 제2조 등		· ‘업사이클링’을 ‘재활용’으로 순화
안 제16조	제1항	· 위원 구성 변경(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→위촉직과 당연직)
	제2항	· 부위원장직 폐지
	제5항	· 협의회를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
	제7항	·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관한 사항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준용
안 제17조		· 위원장 직무 정비
안 제18조		· 협의회 운영 조항 정비

나. 검토의견

- ‘업사이클’은 재활용품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이르는 말로 2012년 국립국어원과 한국방송공사(KBS)는 ‘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’를 통해 ‘업사이클(upcycle)’의 순화어로 ‘재활용’을 최종 선정¹⁾하였음.

또한, 시민과 서울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 「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」를 제정한바,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 내용 중 ‘업사이클링(upcycling)’을 ‘재활용’으로 순화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.

- 안 제16조제1항, 제2항, 제5항 및 제7항은 협의회²⁾ 위원 구성을 변경³⁾하고

1) “‘업사이클’은 ‘재활용’으로-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선정-”(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, '12.9.5.)

2) 서울재활용플라자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

3)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→ 위원장 1명

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며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임.

비상설 협의회 전환은 동 협의회 개최 실적을 고려하여 ‘2024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’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.

다만, 비상설 협의회 운영에 따라 위원 구성의 어려움과 위원의 소속감 저하 우려가 있는바,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.

<최근 3년간 협의회 운영 현황>

연 도	내 용
2022년	• 미개최
2023년 (7.7./12.20.)	• 2023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 및 2024년 추진계획 보고 •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 방안 토의
2024년 (5.24./12.27.)	• 2024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 및 2025년 추진계획 보고 • 창업지원센터 업무 만료에 따른 업무 이관 방향 논의

- 안 제17조와 제18조는 비상설 협의회 전환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소집 등의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.